

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6-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2.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총무과)

1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 제10조의 표창절차중 추천된 포상대상자의 심사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
- 정부표창규정 제11조(공적심사)와 제13조(각기관공적심사위원회)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관련근거

- 상훈법 제5조제3항
- 상훈법시행령 제2조제2항
- 정부표창규정 제13조제2항

3. 주요골자

- 조례내용중 “인사위원회”를 “공적심사위원회”로 개정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및 제4항 “인사위원회”를 각각 “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포상절차) ① 생략</p> <p>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<u>인사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, 각급단체, 언론기관,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<u>인사위원회</u>에서 심사선정하되,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 심사를 병행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0조(포상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.....<u>공적심사위원회</u>....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</p> <p>.....<u>공적심사위원회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상 혼 법

제5조(서훈의 추천) ③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상훈법 시행령

제2조(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)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기관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정부표창 규정

제13조(각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)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